

연계전공 운영위원회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연계전공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- ② 연계전공 신설 및 폐지
- ③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에 관한 주요 사항
- ④ 연계전공 졸업심사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연계전공 주임교수 및 담당전공교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원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 간사는 교무과장으로 한다.

제4조 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계전공 주임교수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도를 받아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담당한다.

제6조 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 (기타)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,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내규의 개폐) 이 내규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개정 한다.